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2월 3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2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2. 1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우리 구(區) 18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기에 발의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본칙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를 명시함.
-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의식의 고양을 위한 주민 참여 기구로 시작되었으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

례」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.

- 또한,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토대로 시범동(여의, 문래, 양평2, 신길5, 대림1동)을 2년 운영한 후 확대동(영등포본, 영등포, 당산1, 양평1, 신길3, 신길6, 대림3동)을 2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.
-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자치구(강남, 서초, 중구)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 중 우리구(區)를 포함한 7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.

○ 검토 결과

-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규모 측면에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, 주민 자치 위원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을 포괄하는 위원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주민 대표성이나 참여 확대 부문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비효율성도 보여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은 '23년부터 중단됨.
- 또한 현재 우리구(區)의 모든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바, 이러한 여건의 반영 및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감안 하면 본 조례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그러나, 본 조례의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이 아직 존치하며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회로의 운영을 원하게 되는 경우 그 설치·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71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2. .

발 의 자: 임헌호, 우경란, 유승용,
정선희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폐지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